

의안번호	2218314
의 퇴 인	윤종오의원
회 답 일	2026.6.19.
추계번호	26B21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2조의2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도심 융합특구의 혁신공간 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구개발 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및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 등 공동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공익법인은 제6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제7항)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의무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제8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32조의2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가. 공동캠퍼스 조성 및 설립·운영비 지원(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외국교육기관 등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 등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울산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이 구상 단계에 있어 부지매입비, 입주 수요 및 조성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고, 향후 연도별 공동캠퍼스 조성 예정단지 수, 해당 공동캠퍼스 내 입주기관은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으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현시점에 해당 입주기관의 수, 규모, 필요한 시설의 종류·규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표 1] 울산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예상규모

- 부지 면적/건축 연면적 : 19,722㎡(5,966평) / 25,757㎡(7,805평)
-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12층

- 다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기 조성된 공동캠퍼스의 1개소당 평균 인프라 구축 단가는 아래 [표 2]와 같이 참고할 수 있음
 - 공동캠퍼스 유상면적 315,108㎡(임대형 148,550㎡, 분양형 161,955㎡)

[표 2] 행복도시 기존 공동캠퍼스의 1개소 당 인프라 구축 단가]

구분	사업비
계	281,872백만원
용지비(토지매입액)	24,936백만원
조성비(토지조성 사업비)	19,777백만원
건물공사비	189,879백만원
기타비용(취득세, 중재조정액 등)	44,713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나.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 출연·보조 비용(안 제32조의2제7항부터 제8항까지)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해 설립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설립 개소 수, 법인별 정원 및 운영 규모 등 구체적인 설립·운영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현시점에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유사사례인 세종시의 재단법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의 2026년 기준 예산 및 인력 현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예산(2026년) 및 인력운영 현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026년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수입		지출	
항목	예산액	항목	예산액
계	4,980	계	4,980
I. 정부출연금	900	I. 인건비	676
기관운영출연금	900	인건비	550
		퇴직급여충당금	46
		법정부담금	60
		인건비 차우개선	20
II. 지자체 보조금	-	II. 경상비	4,282
민간이전(운영비보조)	-	기관운영경비	4,265
		자산취득비	17
III. 자체수입	4,080	III. 사업비	22
대학 임대료	1,902	교류협력사업	10
대학 관리비(분담)	1,922		
편의시설 임대료	56		
주차료	24		
공간임대	73	대학지원사업	12
기타수익	72		
이월금	3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인력 운영 현황]

정원		근무 인원	비고
총원		7명	
	행정팀	4명	행정팀장 1명, 사원 3명
	기술지원팀	3명	기술지원팀장 1명, 사원 2명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